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

- 지역발전본부(~'20.6.30.) :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총괄
- 문화시설추진단(~'20.8.18.) :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전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3. 14. ~ 3. 18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6월 30일” 및 “2019년 8월 18일”을 각각 “2020년 6월 30일” 및 “2020년 8월 18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6859호, 2018. 5. 3.></p> <p>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<u>2019년 6월 30일까지</u>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<u>2019년 8월 18일까지</u>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6859호, 2018. 5. 3.></p> <p>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0년 6월 30일</u>----- ----- ----- <u>2020년 8월 18일</u>-----.</p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관 신설 및 실·본부·국 소관 사무 조정에
관한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24)